PSB (싱가포르)

1. 개요

▣ 정의	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개요	- 싱가폴 전기기기 안전규격, 강제인증제도 - 싱가포르에 규제품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제품안전 관련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와 시험보고서를 갖추어 등록기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대상품목	- 대상품목 : 전자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등 39개 품목 - 규제대상 제외품목(Non-controlled goods) : Air cleaner, Air Purifier, Bread maker, Battery charger, Camping gas stove/non re-usable gas canister, Can opener, Car audio, Car vacuum cleaner/Centrally operated vacuum cleaner system, Coffee grinder, Commercial LPG system, Cloth steamer/facial steamer, Chest Freezer/Wine cooler, Components used in PCs, Dishwasher/ Tumbler dryer, DC operated vacuum cleaner, Energy saving device, Electric ice crusher, Electronic disinfector, Fax Machine, Hand-dryer/hair steamer /hair curler/hair styler, induction cooker/ Solar cooker, Juke boxes, Massage chair, Night lights,Portable television running on battery supply only, Pressure cooker, photocopy machine, Steam steriliser, Split system air-conditioner/Electric dehumidifier/Humidifier, Uninterrupted power supply(UPS), Vending machine, Ventilation fan, Video cassette rewinder, Water distiller
▣ 인증마크	PSB SINGAPORE

▣ 관련기관	- SPRING singapor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 www.spring.gov.sg : 싱가포르의 국가생산성청 (National Productivity Board)과 싱가포르 표준산업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arch:SISIR)가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2002년 4월부터 PSB(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음. - PSB Certification (www.psbcert.com) : PSB관련 제품인증 및 안전검사 증명서(COC) 발급 - Consumer Protection(Safety Requirement) Registration Scheme : www.safety.org.sg : 싱가포르의 안전검사당국의 통제물품(controlled goods)등 안내
▣ 적용국가	- 싱가포르
▣ 적용규격	- SS (Singapore Standard), IEC
▣ 기타	- 안전검사당국에 의해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한 후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함.

2. 상품 안전 등록제도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1991년 6월 1일,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조건)법규 1991를 공표함으로서, 소비자 제품(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지정된 안전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일반 사용 시 안전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PSB는 이러한 법규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역 산업부가 지정한 법적 기관이다.

싱가포르에 규제품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제품안전 관련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와 시험보고서를 갖추어 등록기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일단 제품이 안전등록기관에 등록을 완료하면 제품은 싱가포르에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등록기관은 부가적인 시험과 조사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만일 제품이 안전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관련 제품은 등록기관의 목록으로부터 삭제되어 진다. 만일 제품이 등록리스트로부터 제외되면 제품의 시장판매는 불가능하다.

3. 규제품목의 등록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려는 공급자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목적으로 제품을 제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안전기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Form RS01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by RCB

공급자(Suppliers)는 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CAB(Local) 이나 CAB(Foreign-MRA)에 제품을 제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안전등록기관에 등록을 필하고, 안전등록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공급자 (Registered Suppliers)는 제품의 등록을 필함으로서 "Registered Suppliers"의 호칭 및 제품의 판매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Registered Suppliers가 제품의 판매 및 인증을 위하여 CAB에 규제품목을 제출하면 CAB은 안전마크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규제품목이 성공적으로 인증절차를 완료하면 CAB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Registered Suppliers는 인증품목의 등록을 위하여 안전인증등록기관에 적합성인증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COC의 수령과 더불어 안전등록기관은 "Registered Suppliers"에게 Acknowledgment Receipt for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행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Registered Suppliers"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품공급업자는 반드시 기술문서를 보관 유지해야 한다.

등록규제품목의 변경시, Registered Suppliers는 CAB, CABs 또는 안전등록기관에 동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CAB(Local), CABs(Foreign - MRA)로부터의 적합성 선언서(CoC)를 제출해야 한다.

나. COC(Conformity of Certificate)

적합성 선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계속적인 제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Registered Suppliers는 등록제품의 변경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의 만료이전에 재 등록을 반드시 필하여야 하며 이때는 초기 인증번호와 같은 새로운 COC를 부여받은 후 반드시 제품안전 등록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등록을 위하여 수수료와 새로운 COC의 제출이 필요하다.

다. Registered Suppliers 변경사항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의 이름,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등이 변경될 경우 Registered Suppliers는 적어도 2주전에 안전등록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는 Form RS02와 가능한 경우, RCB가 발행한 회사이름의 변화에 대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 필요하다.

라. 등록된 제품 관련 변경사항

등록품목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행할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재 인증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안전등록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Registered Suppliers는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문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한다.

(1) 변경사항이 기술적인 사항의 경우라도 모델번호에 관한 변경이 아니면 다음을 적용한다.
- 제품의 재등록은 불필요
- 재 인증을 위하여는 인증기관에 개정사항을 제출

(2) 제품의 모델번호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 기술관련 변경사항의 경우.
- 제품의 재등록은 불필요
- 재 인증절차도 불필요
- 공급자는 기술문서를 개정
- 공급업자는 변경사항이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

(3) 만일 제품이 모델번호의 변화를 초래하고, 기술관련 사항의 경우.
- 관련절차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
- 관련절차에 따라 재 인증을 부여.
-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인증서를 소유.
- 새로운 기술문서를 작성.

(4) 비록 변경사항이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하여도 모델번호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제품은 재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관련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필하여만 하고 관련서식(Form RS03)을 작성하여 제품의 외형사진과 내부 사진 그리고 정격라벨과 Main Plug등 기타관련 서류들과 함께 안전등록기관에 제출

- 만일 개정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안전등록기관은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안전 마크를 부 착.
- 새로운 기술문서를 작성.

4. 안전마크

가. 마킹(Marking)

제품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공급자는 반드시 안전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공급업자는 제품의 안전마크를 안전등록기관의 지침에 따라 부착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안전등록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급업자의 제품창고를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마크는 제품에 직접 부착하거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증번호

CAB(Local) CABs(MRA)기관들은 Registered Suppliers가 인증을 목적으로 제출한 규제품목에 대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Registered Suppliers는 Acknowledgment Receipt for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수령한 경우에만 마크를 부착 할 수 있다.
인증번호는 CAB가 발행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XXYYYY-ZZ

XX = 인증년도
YYYY = 시리얼넘버
ZZ = CAB인증코드

5. 제품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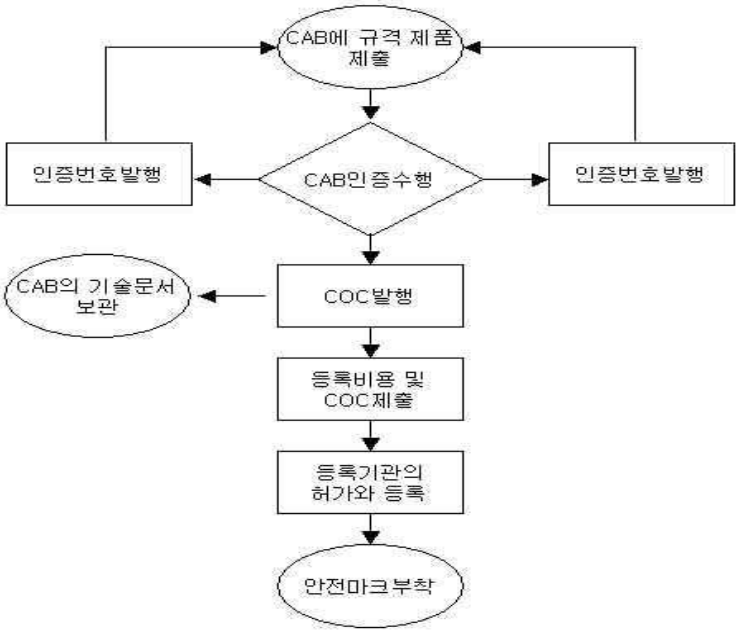
CAB에 규격 제품 제출
인증번호발행
CAB인증수행
인증번호발행
CAB의 기술문서 보관
COC발행
등록비용 및 COC제출
등록기관의 허가와 등록
안전마크부착